



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

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“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코자 합니다.

가. 건 명: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
나. 공람기간: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

다. 공람장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 2286-6571)

라. 공람내용: 공고문(안) 참조

붙 임 공고문(안) 1부. 끝.

지방시설주사 **이희운** 주거사업팀장 **은일근** 주거정비과장 **소순면** 도시관리국장 06/28
윤호중

협조자

시행 주거정비과-8464 () 접수 ()

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http://www.sd.go.kr

전화 2286-6557 /전송 / 부분공개

궁금할 때, 불편할 때 국번없이 120으로!